

#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96
------	-----

2023.7.4.  
기획경제위원회

###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5월 30일, 최진혁 의원(찬성자 47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6월 1일

다. 상정결과 :

#### 【서울특별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2023.7.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 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최진혁 의원)

#### 1. 제안이유

- 도시형소공인은 서울시 전체 제조업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열악한 작업환경 등을 이유로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전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시형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이 요구됨.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 시 도시형소공인 디지털화 활성화,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노후장비 교체 및 작업장 디지털화 등 도시형소공인의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 등의 사항이 추가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 시 도시형소공인 디지털화 활성화 및 도시형소공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

나.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기반시설 조성 및 확충을 위해 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에서 도시형소공인 및 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교육·상담 및 조사와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관련 지원을 가능하도록 함(안 제12조).

라. 노후 장비 교체 및 시제품 개발, 작업장 디지털화 등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보완, ▶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복지시설의 설치, ▶노후장비 교체, 시제품 개발, 작업장 디지털화 등에 관한 지원사업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됨.

#### 나. 도시형소공인 지원 사업 현황

- 도시형소공인<sup>1)</sup>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분류했으나, 다른 소상공인에 비해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 기반의 제조업 형태로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어, 일반 소상공인과 차별화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정부는 도시형소공인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인력양성 및 숙련기술 고도화 지원, ▶집적지구 지정 및 금융·인프라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소공인법”)을 제정(2014.5.28.)함.
- 서울시는 「소공인법」을 근거로 ▶업종별·집적지별 경영혁신 교육,

1) 식료품, 의복, 인쇄, 금속가공 등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소상공인을 뜻하며, 대부분 종사자수가 5명 미만인 영세사업체임.

▶기능인력 양성, ▶마케팅 및 컨설팅, ▶공동장비 활용 등의 교육 사업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 ▶공정자동화·협동화 지원시설 조성·운영<sup>2)</sup>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함(2015.10.8.).

- 2016년부터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육성, 도시형 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도시형 제조업(소공인) 지원, 도시형 소공인 특화지원 광역센터 운영, 스마트앵커 조성, 스마트 솔루션 앵커 조성 등의 지원사업을 시행함.

### <조례 제정 이후 도시형소공인 관련 주요사업 내역>

사업명	사업내용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육성	- 종로 주얼리비즈니스센터 운영 - 서울약령시 한방산업진흥센터 공사 - 마포 디자인·출판 종합지원센터 운영 - 성수IT종합지원센터 운영(수제화 관련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도시형 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 서울시 4대 도시형 제조업장(의류봉제, 귀금속, 인쇄, 기계)의 작업환경 개선비용 일부 지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연계
도시형 소공인 특화지원 광역센터 운영	- 중기부 지정 소공인 특화지원 광역센터(1개소) 및 관내 소공인 특화지원센터(9개소) 조성·운영
스마트앵커 조성	- 스마트앵커 조성(중량구, 중구, 마포구) - 스마트앵커별 협동화 사업 추진
스마트 솔루션 앵커 조성	- 스마트 솔루션 앵커 조성 및 운영(금천, 창신 등 7개소) - 공정개선, 디자인 혁신 등
도시형 제조업(소공인) 지원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지원 -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원 - 도시형제조업(소공인) 거버넌스 구축 - 도시형제조업 집적지 실태조사 - 도시형제조업 우수숙련기술인 선정·지원

2) 스마트앵커, 스마트 솔루션 앵커 등

## 다. 주요 개정사항

### (1)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포함 사항 추가(안 제3조)

- 개정안은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의 수립시 포함해야 할 사항에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화 활성화,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관련 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현 행	개 정 안
제3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7. (생략) <u>&lt;신 설&gt;</u> <u>&lt;신 설&gt;</u>  <u>&lt;신 설&gt;</u> 8. (생략)	제3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7. (생략) 8.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도시형소공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10.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11. (현행 제8호와 같음)

- 「소공인법」이 개정(2022.10.18.)되면서 도시형소공인이 온라인 쇼핑몰, 전자결제 시스템, 스마트·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해 디지털 전환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는 디지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에 포함됨.

- 이후 「소공인법」의 추가 개정(2023.1.3.)으로 종합계획에 도시형 소공인과 그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음(2023.7.4.).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제도와 법령의 개선
	3.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 활용 및 전수에 관한 사항
	4. 도시형소공인의 인력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보급·기술혁신·기술첨단화에 관한 사항
	6. 도시형소공인제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
	7.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원에 관한 사항
	<b>8.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b>
	<b>9. 도시형소공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b>
	<b>10.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b>
	11.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개정안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소공인법」의 개정내용들을 신속히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관계법률과의 통일성·정합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미가 있음.
- 다만, 이후 「소공인법」의 추가 개정(2023.6.20.)으로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가 3년으로 변경(2023.12.21.시행)되었으므로, 정부 종합계획과 연계 되도록 서울시 종합계획의 수립 시기를 일치시켜야 함.

개 정 안	수정의견
제3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제3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① ----- ----- 3년 ----- -----

<p>하여야 한다.</p> <p>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p> <p>1. ~ 7. (생략)</p> <p>8.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p> <p>9. 도시형소공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p> <p>10.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 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p> <p>11. (현행 제8호와 같음)</p>	<p>-----.</p> <p>② -----</p> <p>-----.</p> <p>1. ~ 11. (개정안과 같음)</p>
---	--

- 한편, 2015년 조례 제정·시행 이후 아직까지 서울시 종합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조례의 실행력과 추진력을 저하시키고 있어 시정이 요구됨.

(2)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 설치·관리 근거 추가(안 제11조)

- 개정안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한 사업에 도시형 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과 복지시설의 설치·관리를 추가함.

현행	개정안
<p>제11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p> <p>① 시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u>&lt;신설&gt;</u></p> <p>5. (생략)</p> <p>②·③ (생략)</p>	<p>제11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p> <p>① -----</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u>5. 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관리</u></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 도시형소공인은 대부분 사업장 규모가 작고, 영세하여 종사자를 위한 별도의 휴게공간이나 복지시설을 마련하기 어려운 여건임.

- 이에 「소공인법」이 개정(2023.1.3.)되면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에 휴게시설과 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복지를 개선하도록 하고, 인력 확보와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함.
- 개정안은 법률의 개정사항을 즉각적으로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은 인정됨.

(3)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기능 추가(안 제12조)

- 개정안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업무 중 종전에 도시형소공인에게만 적용되던 교육·상담, 일자리 정보제공 및 알선 업무를 도시형소공인 근로자까지 확대함.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생략)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u>도시형소공인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u> 2. 3. (생략) 4. <u>도시형소공인에 관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일자의 알선</u> 5. (생략) ③ (생략)	제12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1. <u>도시형소공인 및 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교육·상담 및 조사</u> ----- 2. 3. (현행과 같음) 4. <u>도시형소공인 및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에 대한</u>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이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조건, 부족한 일자리 정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에게 일자리 매칭과 고용 안정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과 핵심

기술 전수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4) 노후장비 교체 및 디지털화 활성화, 작업장 디지털화 지원(안 제14조)

- 개정안은 도시형소공인의 노후장비 교체 및 시제품 개발(제3항), 디지털화 활성화(제4항), 작업장 디지털화(제5항) 등을 지원하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①·②(생략)</p> <p>&lt;신설&gt;</p> <p>&lt;신설&gt;</p> <p>&lt;신설&gt;</p> <p>③(생략)</p>	<p>제14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①·②(현행과 같음)</p> <p>③ 시장은 산업재해의 발생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이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 시제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④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라인 쇼핑몰, 전자결제 시스템, 스마트·모바일 기기의 활용 등 디지털화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⑤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제품·기술 가치의 향상을 위하여 작업 공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등 작업장의 디지털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⑥ (현행 제3항과 같음)</p>

- 「소공인법」의 개정(2022.10.18.)으로 도시형소공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후 장비 교체와 시제품 개발, ▶거래와 영업활동 촉진을 위한 디지털화 활성화, ▶작업 공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작업장 디지털화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됨.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재해의 발생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이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 시제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라인 쇼핑몰, 전자결제 시스템, 스마트·모바일 기기의 활용 등 디지털화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의 제품·기술 가치의 향상을 위하여 작업 공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등 작업장의 디지털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정부(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노후장비 교체 지원사업), 스마트공방 지원사업(시제품 개발 지원사업), 판로개척지원사업(디지털화 활성화), 스마트공방기술보급사업(작업장 디지털화)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됨.
-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는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을 직접 추진하기 보다는 정부 사업에 매칭비를 부담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할 필요성은 크지 않음.

## 라. 종합의견

- 개정안은 「소공인법」의 개정내용들을 조례에 반영하면서 관계 법률과의 통일성·정합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미가 있음.
- 다만, 정부와 서울시 종합계획이 연계되도록 수립 주기를 3년으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 한편, 서울시는 노동의 주체성과 노동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근로’를 ‘노동’으로 일괄 변경(2019.3.28.)한 바 있으므로,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통일성·정합성 유지 여부에 대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함.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V. 수정안요지

##### 가. 수정이유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변경함.

#####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도시형소공인 지원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3년으로 함(안 제3조제1항).

#### VI.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796
----------	--------

제안년월일 : 2023년 7월 4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 1. 수정이유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서울시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변경함.

## 2. 수정의 주요 내용

-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3년으로 함(안 제3조제1항).

#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5년” 을 “3년” 으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3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도시형 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7. (생 략)</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8. (생 략)</p>	<p>제3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도시형 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7. (현행과 같음)</p> <p>8.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p> <p>9. 도시형소공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p> <p>10.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고용 인정,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p> <p>11. (현행 제8호와 같음)</p>	<p>제3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 계획의 수립) ① ----- ----- 3년----- -----.</p> <p>②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개정안과 같음)</p> <p>9. (개정안과 같음)</p> <p>10. (개정안과 같음)</p> <p>11. (개정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5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도시형소공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10.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관리

제12조제2항제1호 중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교육·상담”을 “도시형소공인 및 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교육·상담 및 조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도시형소공인에 관한”을 “도시형소공인 및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에 대한”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산업재해의 발생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이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 시제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라인 쇼핑몰, 전자결제 시스템, 스마트·모바일 기기의 활용 등 디지털화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제품·기술 가치의 향상을 위하여 작업 공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등 작업장의 디지털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7. (생략)</p> <p>&lt;신설&gt;</p> <p>&lt;신설&gt;</p> <p>&lt;신설&gt;</p> <p>8. (생략)</p> <p>제11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① 시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 과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lt;신설&gt;</p> <p>5. (생략)</p> <p>②·③ (생략)</p> <p>제12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생략)</p> <p>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p> <p>2.·3. (생략)</p> <p>4.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p>	<p>제3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3년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p> <p>9. 도시형소공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p> <p>10.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p> <p>11. (현행 제8호와 같음)</p> <p>제11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①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관리</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2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도시형소공인 및 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교육·상담 및 조사 -----</p> <p>2.·3. (현행과 같음)</p> <p>4. 도시형소공인 및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p>

5. (생략)

③ (생략)

제14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①·

② (생략)

<신설>

<신설>

<신설>

③ (생략)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산업재해의 발생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이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 시제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라인 쇼핑몰, 전자결제 시스템, 스마트·모바일 기기의 활용 등 디지털화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제품·기술 가치의 향상을 위하여 작업 공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등 작업장의 디지털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현행 제3항과 같음)